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8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 박대수 · 김용판 · 지성호

서범수 · 임이자 · 윤창현

강기윤 · 김태호 · 김형동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6.4%(2019년 기준)에 달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행정적·사법적 구제절차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기간제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고 있어 비정규직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사실상 이용하지 못하는 불 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제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구 제명령을 명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 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해고 등에 대한 금전보상액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제30조(구제명령 (생 략) < <u>신</u> 설>		1) ~	3	개 정 안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 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
				면 사용자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